

의약부외품에 농림해충방제 효과 포함

농약안전사용 사회교육에 문제점던져

최근 일부 의약품 제조회사에서 의약부외품으로 시판하고 있는 분사용살충제(에어로졸)의 효능 및 효과에 적용해충이 아닌 농림해충까지 포함시키고 있어 환경보건 및 사용자의 건강보호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약품제조회사가 의약부외품의 허가를 받아 약국, 슈퍼마켓, 일반연쇄점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분사용 살충제의 주된 사용목적은 사람 및 동물에 해(害)를 주는 위생 및 보건 해충 구제에 있으나 최근 삼성제약공업(주)가 시판하고 있는 「에프킬라 가든」은 사용대상에 농림해충인 밤나방, 진딧물, 응애류의 방제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밤나방, 진딧물, 응애등은 농림해충 중에서도 저항성을 쉽게 획득하고 1년에 수 세대가 발생하는등 방제하기가 어려운 해충으로 알려지고 있어, 파리·모기등 단순한 위생해충

구제용 약제로 농림해충을 방제한다는 것은, 약효상에 문제점이 있을뿐 아니라 농약관리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더우기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가정원예용 분사식 농약은 농약관리법에 의해 자격을 갖춘자가 관리하는 농약상에서만 취급 판매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약효의 신뢰성에도 문제점이 없지 않은 「에프킬라가든」같은 의약부외품의 판매 및 사용을 방임한다면 농약안전사용이라는 사회교육차원에서든 문제가 뒤따른다.

농약은 병·해충과 잡초를 죽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약제이므로, 대부분의 농약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독성을 갖고 있어 잘못 사용하면 인축에 해작용을 일으키고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국민의식의 향상에 따라 농약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농약잔류에 대한 규제도 점차 엄격해지는 추세에 있다.

더구나 농약은 농약관리법에

의하여 제조·판매·취급 등이 규제되고 있으며 국·공립시험연구기관에서 엄격한 약효·약해·독성 및 잔류성 시험 등을 거쳐 안전성이 확인되어야 고시가 되고, 고시된 농약도 반드시 적용대상 작물과 병해충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삼성제약공업(주)가 시판하고 있는 「에프킬라 가든」은 농약의 효능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적용대상작물은 물론 사용시기 등에 대한 설명조차 없어요·남용으로 인한 약해유발이 우려되고 있다.

삼성제약공업(주)는 「에프킬라 가든」의 효능 및 효과에 밤나방, 진딧물, 응애 등 농림해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는 농약관리법에 따른 시험을 거쳐 약효·약해·독성 및 잔류성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후에 정확한 사용대상 작물 및 사용시기를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

면 현재 포함시키고 있는 사용대상중에서 농림해충을 삭제하고 이에 대한 TV 등의 광고도 중지 혹은 수정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다.

농약은 농작물을 병·해충 및 잡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약을 사용할 때는 마스크·방제복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살포작업에 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에프킬라 가든」이 밤나방, 진딧물, 응애류 등 농림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면 농약에 버금가는 독성을 지닌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의 사실인데 이러한 약제를 파리·모기·바퀴벌레 등 실내해충구제를 위해 실내에서 아무런 규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하고 있는 것은 농약의 안전사용이라는 사회교육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문제점이 없지 않으며 차제에 이와 같은 의약부외품에 대한 단속과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